

(청심국제고 학생자치법정 규정 中)

| 제5조

제5조(책무)

- ① 법정 구성원은 직책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학생자치법정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법정 구성원의 모든 지위와 권한은 학생자치법정과 그 직무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제5조의2(품위유지의 의무)

법정 구성원은 직책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3(비밀준수의 의무)

법정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5조의4 (재심청구의 의무)

- ① 학생자치법정의 판결 및 결정은 교내 모든 학생 자치기구 및 학생에게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될 수 없다.
- ② 다만, 학생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5 (교칙적 (헌법) 지위)

- ① 학생자치법정은 교내 학생 인권 보장과 규칙 해석에 관한 최종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존중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의 판결과 결정은 교내 규칙 해석의 합리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학교와 학생회는 이를 신뢰와 존중의 태도로 따른다.

| 제27조

제27조 (학생회원의 교육처분)

- ① 판사는 전교회장단을 제외한 학생 회원에게 교육처분을 부과할 때 탄핵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판결의 배경이 된 규칙에 이의가 있을 시 위법규칙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제27조의2 (판결 불이행에 대한 제재)

- ①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이나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단체는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은 필요시 학생회 활동 참여 권한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 70조

제70조(출석, 동행명령)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의2 (감사 및 감독 권한)

- 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예산 집행 상황과 규칙 준수 여부를 학기 중 1회 이상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감사 결과 부당한 집행이나 위법한 규칙 운용이 발견될 경우, 학생자치법정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 ③ 전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제70조의3 (직권 개시)

- ① 학생자치법정은 교내 질서와 학생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직권 개시 요건 및 절차는 판사가 정하여 공표한다.

(청심국제고 학생회 회칙 中)

| 제 52조 (학생총회의 구성)

제52조(학생총회의 구성)

-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 ② 자치법정 대표의 참관은 허용된다.

| 제 53조 (학생총회의 진행)

제53조(학생총회의 진행)

- ① 학생총회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부서장 중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소집된다.
- ② 제①항의 특수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장단의 회의 소집 요청
 - 2. 본교 교사의 회의 소집 요청
- ③ 학생총회는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전체 학생부서장 과반수의 출석 없이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④) 학생총회 결정 투표권은 모든 참여인원에게 동등히 부여되며, 자치법정 대표는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 4-1) 학생총회에 참관하는 학생자치법정 대표는, 회의 또는 투표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2) 학생자치법정이 행사한 거부권은 총학생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
 - 4-3) 학생자치법정의 판결 및 승인 사항은 학생총회와 학생회장단을 포함한 모든 자치기구에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그 결정은 교내 다른 기구에서 반복될 수 없다. 단, 교사회의 특별 재의결(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할 수 있다.

| 제 32조 (학생회장단의 역할과 의무)

제32조(학생회장단의 역할과 의무)

- ① 학생회장단은 본 회칙을 수호하며 본 회를 운영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선거 출마 당시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와 학생생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매년 본교의 중요 행사(입학식,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더 나은 행사를 만들기 위하여 행사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건의할 의무를 가진다.
- ④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회장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토론회의 사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를 가진다.
- ⑤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가진다.
- ⑥ 원활한 학생회 활동 진행을 위하여 학생부서장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의무를 가진다.

⑦) 학생회장단은 예산안을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7-1) 학생회장단은 예산 계획을 학생자치법정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용 -----

학생회 회칙 제19조 제2항(책임의 의무)

- 학생부서의 본 회칙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학생부서장이 학생자치법정의 징계 대상이 된다.

학생회 회칙 제20조 제1항(회칙 수호의 의무)

- 학생부서장은 소속학생부서 내부에 있어 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학생회 회칙 제26조 제2항(조직 구성의 권리)

- 각 학생부서의 학생부서장은 학생회장단에게 조직 구성의 일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학생회 회칙 제26조 제5항(조직 구성의 권리)

- 학생부서장의 조직구성에 대해 학생회장단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학생회 회칙 제59조 제1항(학생자치법정의 결정)

- 학생자치법정의 결정은 학생회원을 구속한다.

학생회 회칙 제69조 제2항(학생부서장 해임 절차)

- 학생부서장 해임의 사유는 이리하다
 - 1) 학생부서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2) 잘못된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학생회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3) 학생회장단이 판단하기에 학생회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
 - 4) 독단적인 행동으로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에 혼란을 야기했을 경우

학생회 회칙 제69조 제3항(학생부서장 해임 절차)

- 학생부서장의 해임에 관한 안건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2.09.07 학생부서 운영 및 징계 관련 학생회칙 모음)

| 제 63조 (증인 및 증거 요청의 권리)

제63조(증인 및 증거 요청의 권리)

① 학생자치법정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증인 · 증거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 ①-(수정)) 학생자치법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관련된 학생, 학생회장단, 학생부서에 대해 증인 출석, 문서 제출, 사실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모든 학생회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법정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③) 학생자치법정의 요청에 따른 증언, 자료 제출, 사실 확인 요구는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생자치법정은 해당 학생 또는 단체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 제 68조 (재심)

제68조(재심)

- ① 학생자치법정은 재심이 청구된 사항에 대해 1회 재심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 ② 재심에 있어서 자문위원의 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수정)) 판결 확정 후, 관련 당사자 또는 학생회는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학생자치법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수정)) 재심 개시 여부는 회장단 및 각 부서장의 투표로 결정하며, 재심 개시 의견이 8표 이상일 경우 학생자치법정은 재심을 진행한다.
 - 2-1) 학생자치법정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경우, 해당 사안은 교사회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 ③) 학생자치법정이 내린 판결을 불이행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해당 학생회 조직 또는 개인은 별도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학생회 활동 참여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 제70조 (학생회 징계 외의 역할)

제 70조(학생회 징계 외의 역할)

- ① 학생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징계 외 학생자치법정의 활동 방향 및 세부사항은 자치법정규정에 따른다.
- ②) 학생부서 및 학생회장단의 예산안 계획을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 ②-1) 학생회의 모든 예산안은 학생자치법정의 승인 하에 적용될 수 있다.
- ③) 학기 말, 학생자치법정은 학생회의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 ④) 학생자치법정은 학생회장단 및 각 부서의 예산 집행 과정을 학기 중 1회 이상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부당 집행이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⑤) 전항의 시정 명령은 모든 학생회 조직에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부칙 제 3조

제3조

- ① 본 회칙의 수정은 학생총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제①항에서의 수정은 참가 부서장 3분의 2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① -1) 제 1항에서의 회의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자치법정 판사들의 주도 하에 진행한다.
- ②-(수정) 제 1항에서의 수정은 참가 부서장과 전교회장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 본 회칙의 수정은 회장단 대표, 학생부장단, 판사장의 승인을 통해 선생님께 전달한다.

[학생회칙 추가부분]

제14조(징계심사의 권리)

1항) 학생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징계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23년 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징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학생자치법정의 징계 심사 권한 역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짐. 상위법에서 징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 회칙 제14조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고 결론을 내림.

제15조(대표성의 권리)

1항) 학생회원은 교외 교내 활동에 있어서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본 회를 대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특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총회를 통해 대표성이 허가된 활동
2. 학생회장단이 포함된 활동
3. 학생부서중 과반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학생부서 중 과반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특정 활동에 학생부서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과도한 해석이며, 협력의 의미를 '참여 강제'로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자치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법적 정당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단함.

제16조(의견표출의 권리)

1항) 학생회원은 공식 절차에 맞추어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2항) 제1항의 공식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학생부서장에게 건의안 작성 후 제출
2. 소속 학생부서 내부 회의를 통한 건의안 검토
3. 학생총회 및 개인 보고를 통해 학생회장단에게 전달

학생부서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승인될 수 있음. 그러나

부서장이 탈퇴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는 자치법정에 탈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총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이 절차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간주하였음.

제17조(해임건의의 권리)

해임 접수 과정.

해임 희망 접수시, 자치법정이 구성원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 전교회장단에 먼저 넘기고, 이후 재판을 진행해야한다.

- 1항) 학생회원은 소속 학생부서의 부서장 및 부서원의 해임을 학생회장단에 건의 할 권리가 있다.
- 2항) 제1항에서의 해임 건의는 합당한 사유와 증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 3항) 타 부서의 부서장에 관한 해임 건의는 소속 부서의 부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4항) 고의, 악의적 사유에 따른 해임 건의의 건의자는 학생자치법정에 회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